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 (3)

동업계약이 필요한 이유

A는 대학동기인 B와 4차산업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 A는 B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계약서를 쓰자고 말하기가 좀 꺼끄러웠다. 그러나 “아무리 친해도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하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참조하여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B가 수락을 하면, 한 번에 완벽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

동업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은 보통 잘 알려져, 친한 관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디어와 젊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동업 등은 성장 가능성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한계, 자본의 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게 사라져간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특히 예전과 달리 지금은 분업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마케팅, 연구, 투자, 홍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빌 게이츠처럼 혼자서 연구와 홍보, 마케팅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이미 사라진 것이지요. 더구나 4차산업, 블록체인, 커넥티드 등 주력 사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움직임 또한 내가 추진하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는, 동업이 많이 생겨납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항상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나를 못 믿느냐”입니다. 문자로 된 계약서, 동업 문서가 없다면, 향후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계약서’ 문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꺼끄러운 문제이지요.

그러나, 계약서를 쓰는 시간은 한 순간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소 1~2년은 그 문제에 휘둘러야 됩니다. 이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좀 어색해지더라도, 나중에 편하자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특히 요즘 외부 투자자의 경우, 동업자 간에 명확한 동업계약서가 있는지 여부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명확한 동업 관계를 규정한 계약서가 있어야

만, 사업의 성공여부, 투자 여부가 더 명확해지는 것이지요. 동업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업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동업계약서도 일반 계약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약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일을 하는 지 등 역할 분담과 수익배분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돈을 내는 사람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술적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이 각 다르다면, 동업자간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그 평가액 등을 상호간에 협의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통 “A는 00을 맡고 B는 00를 맡는다” 등으로 간단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동업계약서에는 “A는 XX와 YY를 제외한 00을 맡되, 만약 ZZ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B와 A가 함께 문제 해결을 담당한다” 등 더욱 구체적인 세밀한 내용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손익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잘 될 때는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만약 잘 안된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법인이 아닌 개인 간 동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혹은 소득세가 상당한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는만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세금 관련된 납부 비율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다른 동업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이 기밀유지에 관한 특약과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입니다. 동업하는 사업이,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아이디어, 아니면 기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 특정인의 움직임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사업 원천에 대한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 종료/파기 후 정산과정에 대한 조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로 동업이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는 지가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단독 의사표시로 동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지, 나아가 귀책사유에 따라 변동되는 자산 배분 기준이 있는 지가 주로 다투어지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좋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2020, 원앤원북스),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등을 출간.